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9.

제 안 자 : 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심사 경과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	경과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6579호)	정부	2024. 12. 17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6860호)	우재준	2024. 12. 23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7814호)	김소희	2025. 1. 24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9291호)	윤준병	2025. 3. 24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0751호)	전재수	2025. 6. 12.	※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회부

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(2025. 9. 17.)에서
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
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, 제
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25. 9. 19.)
에서 이를 심의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
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,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
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, 환
경부는 민원센터 운영,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
나,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,
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
위치,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, 충전시설의
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. 또한, 전
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될 수 있
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, 적정 관리
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
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, 현재 환경부장관

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·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,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「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」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종전 「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」에 따라 면제하던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면제 근거 규정(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).
- 나.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·운영자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·이용 정보 등록 의무·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(안 제58조의10·제58조의12 신설 등).
- 다.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·허가 의제조항 유효기간 연장(안 제58조의11).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58조제11항 중 “이하 이 조에서”를 “이하”로 한다.

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8조의13부터 제58조의15까지로 하고,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10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)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,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, 충전요금,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,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

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,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·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11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)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·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58조의12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,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,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15(중전의 제58조의12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(중전의 제58조의12) 제2항 중 “제58조의11제1항”을 각각 “제58조의14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2조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제94조제3항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
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
하지 아니한 자
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“2025년”
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
제35조의2제3항 및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
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제58조의10제1항의
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
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
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

제3조(충전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) 제5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 ① ~ ⑩ (생략) ⑪ 저공해자동차,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(<u>이하 이 조에서 “저공해자동차등”이라 한다</u>)의 소유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⑫ ~ ⑲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 ⑪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⑫ ~ ⑲ (현행과 같음) <u>제58조의10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)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</u>

설의 위치,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, 충전요금,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,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,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·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58조의11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)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

<신 설> 제58조의10 · 제58조의11 (생 략)	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 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 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 하게 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.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 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 ·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제58조의12(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 전담기구의 지정) ① 환경 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 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 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 록,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, 관 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 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 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 제58조의13 · 제58조의14 (현행 제
---	---

제58조의12(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신고·지정·인가·협의 등(이하 “인·허가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·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1. ~ 14. (생략) ②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③·④ (생략) 제9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9. (생략) <신설>	58조의10 및 제58조의11과 같음) 제58조의15(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----- 제58조의14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제58조의14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92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1. ~ 9. (현행과 같음) 9의2.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
--	--

10. ~ 14. (생 략) 제94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 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0의2. (생 략) 11. ~ 16. (생 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~ 9. (생 략) ⑤ · ⑥ (생 략)	<u>자</u> 10. ~ 14. (현행과 같음) 제94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0의2.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</u> <u>10의3. (현행 제10호의2와 같음)</u> 11. ~ 16. (생 략) ④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</u> 5. ~ 9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--	---